

## 2020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안)

2020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립암센터원장

### 1. 지원내용

프로그램	구분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역암센터 연구지원 사업	지역암센터 특성화 연구 지원	250백만원/과제 (2020년은 375백만원/2과제)	5년 이내 (2단계, 3년+2년)

➔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지역암센터 연구지원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 2. 신청요건

#### 1) 연구기관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49호, 2019.10.8.]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선임급 이상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 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 연구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임용 협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연구기관별 책임급, 선임급의 기준은 [별첨1]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참조

## 3) 세부과제 구성요건

- 지원 프로그램별 제안요청서(RFP)를 참고하여 세부과제를 구성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위탁과제는 구성 가능)
- 기업체의 참여를 권장함

## 4) 신청 및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

### 가. 참여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 예정일(2020. 4.)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 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또는 타 부처 지원으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신청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 모든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

### 나. 신청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 3책 5공 예외사항: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은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1인 1과제만 참여(수행) 가능함.  
다만,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2020. 6. 20.)에 종료  
되는 경우 또는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계획서는 접수 후 연구책임자의 신청 및 참여 제한 여부에 대해 신청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는 탈락됨

###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준수

- 인간과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함)을 준수하여야 함
  - \* 인체유래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법 제2조제11호)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법 제3조)
  -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10조)
    -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연구기관, 병원 등 포함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세부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http://irb.or.kr>))
  - 인간 대상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전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 유래물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법 제15~16조, 제36~37조)
- 잔여배아 연구,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연구, 유전자치료 및 검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연구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예: 배아연구기관등록증, 배아연구

계획승인서,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신고필증 등)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및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 6) 임상연구정보 CRIS 등록

- 등록대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임상시험)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CRIS 등록문의: 043-719-8662 / [criskorea@korea.kr](mailto:criskorea@korea.kr)
- 성과보고 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음
- 2010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ICTRP)에 국가대표등록 시스템(Primary Registry)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의 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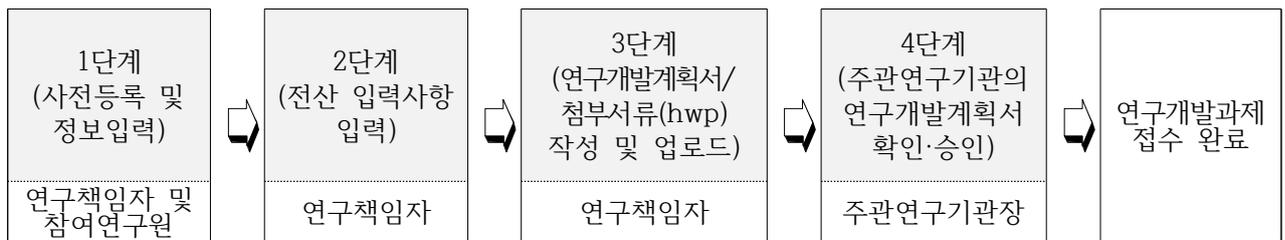
#### ※ 정보등록 시 유의사항

- ➔ 등록 시점: 첫 피험자모집 전에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도 등록이 가능
- ➔ 등록 권한: 회원가입 후, 등록 권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 가능

## 2.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세부내용을 숙지한 후  
적정 프로그램을 선택함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신청 확인 및 승인
  -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을 별도로 제출



🔍 과제평가 및 관리는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

### 2) 속지사항

- 연구비 산정  
신청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와 [별첨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연구비를 산정함.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본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불인정함
- 참여기업 부담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대기업: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이하  
“총연구개발비”라 함)의 50% 이상

2. 중견기업: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3. 중소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4.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5.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의 기준을 따름
1. 대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2. 중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3. 중소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정부지원 연구비가 신청액보다 삭감 지원될 경우에도 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참여기업 부담금은 삭감할 수 없음

### 3)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공문(일괄 제출)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전산파일
  -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http://www.htdream.kr))에 전산 등록하여 제출

### 4) 제출기한

- 접수기간: (연구책임자) 2. 14.(금)~2. 19.(수), 17:00  
(기관담당자) 2. 14.(금)~2. 20.(목), 17:00

-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므로,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접수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3. 첨부파일

- 「2020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계획」 1부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각 1부. 끝.

#### 문의처

- 제출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우편번호: 10408)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
- 홈페이지: <http://ncc.ncc.re.kr>, <http://www.ncc.re.kr>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 Dream) <https://www.htdream.kr>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https://www.gaia.go.kr>
- 문의처: TEL) 031-920-1083~4(사업관련), FAX) 031-920-1089

별첨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① 인건비	<p><b>【사용용도】</b></p> <p>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인건비 정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의</th> </tr> </thead> <tbody> <tr> <td>내부 인건비</td> <td>•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td> </tr> <tr> <td>외부 인건비</td> <td>•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td> </tr> <tr> <td>연구 지원인력 인건비</td> <td>•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td> </tr> </tbody> </table>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p><b>【계상기준】</b></p> <p>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인건비 산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산정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td> <td>•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td> </tr> <tr> <td>기타기관</td> <td>•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td> </tr> </tbody> </table> <p>※ “해당 과제 참여율”</p>	구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기타기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구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기타기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직접비	① 인건비	<p>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급여총액(기타기관의 경우 급여기준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p> <p>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현황을 명시</p> <p>※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실제 근무 또는 1년 이상 근무 예정(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함)인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계상 가능</p> <p>※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는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p> <p>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p> <p>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p> <p>※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과제참여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p> <p>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p> <p>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p> <p>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p> <p>※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참조</p> <p>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	----------	--

직접비	<p style="text-align: center;">① 인건비</p>	<p>사.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p> <p>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가.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p> <p>나.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p> <p>다. 대학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하되, 단과대 또는 학과단위에서 인건비 집행가능</p> <p>라. 출연(연)등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소속 전담지원인력에 한해서 직접비의 연구지원인건비를 집행 할 수 있음</p> <p>마. 겸직 또는 겸무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에서 집행할 수 없고, 간접비의 지원인력인건비와 직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를 중복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p> <p><b>【참고사항】</b></p> <p>○ <b>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b>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현금부담금 감면 연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소속 청년인력 포함)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p> <p>※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 인력 미채용, 참여율 감소 등의 사유로 원래 계획보다 감액한 금액은 반납대상</p> <p>○ <b>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b>을 해고 하거나 채용예정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건비(현금·현물)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 또는 인건비 집행액(현금·현물)이 민간 현금부담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회수)</p> <p>○ <b>인건비 현물 산정기준</b> : 수행기관 급여기준 × 참여율</p> <p>○ <b>참여연구원 변경</b>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에서는 참여연구원 변경이 있는 경우 「협약변경 처리기준」 붙임 8, 9의 서식을 활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당월 인건비 지급 전까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변경내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다만,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에서는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당월 인건비 지급전까지 해당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변경내역을 등록관리하고 관련 문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p>
-----	--	--

직접비	② 학생 인건비	<p><b>【사용용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li> <li>「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li> <li>출연(연)·특정(연)·전문(연)에서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li> <li>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li> </ol> <p><b>【계상기준】</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지정 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li> <li>※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li> </ul> </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지정 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li> <li>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li> <li>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li> <li>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li> <li>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li> <li>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li> </ul> </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지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li> <li>※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li> </ul> </li> </ul>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지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li> <li>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li> <li>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li> <li>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li> <li>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li> <li>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li> </ul> </li> </ul>
	구분	세부내용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지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li> <li>※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li> </ul> </li> </ul>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지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li> <li>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li> <li>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li> <li>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li> <li>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li> <li>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li> </ul> </li> </ul>							

	<p>② 학생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li> <li>-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100만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180만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250만원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함</li> </ul> </li> </ul> <p><b>【참고사항】</b></p> <p>○ 연구기관 필수 이행사항 :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하여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정산시 제출</p>
<p>직접비</p>	<p>③ 연구 시설 · 장비비</p>	<p><b>【사용용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함)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li> <li>2. 연구시설·장비 임차·유지보수·이전설치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li> <li>3. 연구시설·장비 개발경비 : 연구개발성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li> <li>4. 연구인프라 조성 시설·장비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li> </ol> <p><b>【계상기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li> <li>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li> </ol> <p>* 사용용도 제2호에 한하여 직접비(미지급인건비 및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 집행·관리</p> <p><b>【참고사항】</b></p> <p>③</p>

직접비	연구 시설 · 장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하 같음) 이상 1억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하 같음)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구축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보건복지부(전문기관) 심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li> </ul> </li> <li>○ 3천만원 이하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기관 결재문서 등)를 구비하여야 함</li> <li>○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 시 해당 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 첨부</li> </ul> </li> <li>○ <b>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li> <li>-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 구입 또는 변경 구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한 시설·장비의 도입(검수·설치포함) 및 연구비 집행 완료(단, 최종(단계포함) 연도의 경우 종료 2개월 이내 도입(검수·설치포함) 완료)</li> </ul> </li> <li>-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당해연도에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 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연도 이월 구매시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한 시설·장비의 도입(검수·설치포함), 연구비 집행은 다음연도 연구기간에 이행 완료(단, 최종(단계포함) 연도의 경우 이월 구매 불가)</li> </ul> </li> </ul> </li> <li>○ <b>현물 산정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당해연도 연구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li> </ul> </li> </ul>
		<p><b>【사용용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여비</b> : 국내외 출장여비</li> <li>2. <b>수용비 및 수수료</b>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위탁정산수수료 포함) 등</li> <li>3. <b>기술정보활동비</b> : 전문가 활용비(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li> </ol>

직접비	④ 연구 활동비	<p>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일용직 활용비 등</p> <p>*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 부서를 의미함</p> <p>** 기술도입비는 연구계획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의해 산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산정시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mp;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li> <li>· 기술 라이선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 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선싱 비용(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금액)</li> <li>- 현금계상시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정액기술료(착수기본금, 선급금 등)에 한하며, 경상기술료는 제외)</li> </ul> </li> </ul> <p><b>4.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b>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p> <p>* 보건의료분야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속과제의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모집 광고료, 임상시험 보험료는 해당과제의 최종연도(단계 최종연도 포함) 종료일내에서 계약 가능</p> <p><b>5. 과제관리비 :</b>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p> <p><b>6. 특허정보 조사비 등 :</b>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p> <p><b>7. 연구과제 운영경비 :</b>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p> <p><b>8. 기기 및 SW구입비 :</b>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함)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기기를 말하며,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함)의</p>
-----	----------------	--

직접비	<p>④ 연구 활동비</p>	<p>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p> <p>9. 연구인프라 조성 사업관리 추진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p> <p><b>【계상기준】</b></p> <p>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됨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 기준</p> <p>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본 지침 「9.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퍼센트 이내에서 계상  ※ 5%초과 계상 가능하나 5%초과 집행 시 정산 실시</p> <p>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4.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해당하는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 불가</p> <p>5.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과제만 계상)  - 연구개발비 규모(당해연도 현금총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p> <table border="1" data-bbox="496 1093 1453 1406"> <thead> <tr> <th>연구개발비 규모</th> <th>정산수수료</th> <th>연구개발비 규모</th> <th>정산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0.5억 미만</td> <td>600천원</td> <td>5억 이상 10억 미만</td> <td>1,647천원</td> </tr> <tr> <td>0.5억 이상 1억 미만</td> <td>987천원</td> <td>10억 이상 30억 미만</td> <td>1,845천원</td> </tr> <tr> <td>1억 이상 3억 미만</td> <td>1,185천원</td> <td>30억 이상</td> <td>2,043천원</td> </tr> <tr> <td>3억 이상 5억 미만</td> <td>1,515천원</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과제(위탁과제 제외) 수에 따른 가산금  - 주관 1과제(단독과제) : 가산금 없음  - 세부 1개 기관(과제) : 수수료의 10퍼센트 가산  - 세부 2개 기관(과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퍼센트 가산  ※ 사업단의 경우 총괄과제별로 정산수수료 책정하고 세부과제 수에 따른 가산금 책정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기관이 수행하는 주관, 세부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산 수수료 산정 시 제외</p> <p>6.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p>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60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1,647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987천원	10억 이상 30억 미만	1,845천원	1억 이상 3억 미만	1,185천원	30억 이상	2,043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1,515천원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60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1,647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987천원	10억 이상 30억 미만	1,845천원																			
1억 이상 3억 미만	1,185천원	30억 이상	2,043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1,515천원																					
<p>⑤ 연구 재료비</p>	<p><b>【사용용도】</b></p> <p>1. 재료비·전산처리비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p> <p>2. 시약품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p> <p><b>【계상기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li> <li>2.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li> <li>3.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li> <li>4.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계정대체 가능)</li> </ol> <p>*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p> <p><b>【참고사항】</b></p> <p>○ 현물 산정기준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 생산·판매중인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p>
직접비	<p>⑥ 연구수당</p>	<p><b>【사용용도】</b></p> <p>○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p> <p><b>【계상기준】</b></p> <p>○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p> <p><b>【참고사항】</b></p> <p>○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예산대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회수함</p> <p>※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p> <p>※ 직접비 집행비율 : 전년도 이월금 사용금액을 포함한 총 집행액(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p> <p>○ 연구자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연구개발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p>○ 지급방법</p> <p>-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p>
	<p>⑦ 위탁 연구개발비</p>	<p><b>【사용용도】</b></p> <p>○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p> <p><b>【계상기준】</b></p> <p>○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p>

직접비		<p>제외한 직접비(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b>【참고사항】</b></p> <p>○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 : 원래계획 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p> <p>※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사항 이외의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시에는 「협약변경 처리기준」 붙임 6의 서식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보고</p> <p>○ 위탁연구기관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동 지침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또한 위탁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세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연구비 반납에 관한 책임을 가짐</p>
간접비	<p>⑧ 간접비</p>	<p><b>【사용용도】</b></p> <p><b>1. 인력지원비</b></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p> <p><b>2. 연구지원비</b></p>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p>

<p style="text-align: center;">⑧ 간접비</p>	<p>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b>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b>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b>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b>(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b>3. 성과활용지원비</b></p> <p><b>가. 과학문화활동비:</b>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b>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b>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b>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b>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p><b>【계상기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li> <li>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li> <li>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li> <li>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li> </ul> </li> <li>4.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li> <li>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li> </ol>
<p style="text-align: center;">⑧ 간접비</p>	<p>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b>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b>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b>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b>(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b>3. 성과활용지원비</b></p> <p><b>가. 과학문화활동비:</b>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b>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b>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b>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b>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p><b>【계상기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li> <li>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li> <li>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li> <li>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li> </ul> </li> <li>4.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li> <li>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li> </ol>

	<p>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p> <p>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p> <p><b>【참고사항】</b></p> <p>○ 간접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예산대비 증액은 불가하며,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에서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회수</p> <p>※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p> <p>※ 직접비 집행비율 : 전년도 이월금 사용금액을 포함한 총 집행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p> <p>○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